

의안번호	제 1 호
의결년월일	1999.

의  
결  
사  
항

사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9. 2. 1

# 사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(안)

의안 번호	/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'99. 2. 2  
제출자 : 사천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
- 나.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조직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비코자 사전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(안 제4조)

### (1) 대상사무의 기준

- (가)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(나)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(다)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### (2) 민간위탁 방법

- (가) 기관위임사무 :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함

(나) 자치사무 :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

나. 사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함 (안 제6조)

(1) 인원 : 6인이상 9인이하(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 포함)

(2) 내용

(가) 위원장 : 부시장

(나)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
(다) 위원 :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

다.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를 규정함 (안 제8조)

(1)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 - 수탁기관

(2) 감독 책임 - 시장

(3)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 -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함

라. 협약체결에 있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마.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함 (안 제12조)

### 3. 법적근거

가.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(사무의 위탁 등)

나.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다.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

- [경남도 자치 12200 - 1006('99. 1. 5호)]

## 사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2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-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
-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- 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 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- 제6조 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수탁기관을 심사·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

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, 수탁기관 심사·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,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 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 (지휘·감독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

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 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 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 (처리상황의 감사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